

1. 우선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 기울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은 "CO2 소화기 재 충전후 사용시 문제점 등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1. 충전기한이 지나도 다시 충전하여 사용 가능한지?
 - 답변 1. 충전기한이 지나서 소화약제 사용(방출)하면 소화약제 충전전에 반드시 용기 재검사를 받고 충전후 사용 가능합니다.(용기 재검사 관련은 첨부된 고압가스법 참조)
 - 질의 2. 다시 충전하여 사용했을 때 사용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성능, 법적리스크 등)
 - 답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에 따라 소화기 내용연수를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CO2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없으며 충전 기한내 소화기 약제를 사용(방출)하였다면 재충전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충전 기한이 지난후 소화기를 사용(방출)하였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용기 재검사를 실시후 재충전 사용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위 황해수(031-8012-93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1부. 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약칭: 고압가스법)

[시행 2021. 12. 16.] [법을 제18269호, 2021. 6.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2호, 2024. 11. 14., 일부개정]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7. 16.]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용기의 종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재검사 주기		
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한다)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500L 미만	5년마다		2년마다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 료용기	500L 이상	5년마다		
	500L 미만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5년마다(설계조건에 반영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마다)		
용기부속품	용기에 부착 되지 아니한 것	용기에 부착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		
	용기에 부착 된 것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해당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마다		
비고				

1.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재검사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산정한다.
2.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고 내용적이 500L 미만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검사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년
 - 나. 내식성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년
3. 내용적 20L 미만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포함한다) 및 지게차용 용기는 10년을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한다.
4. 1회용으로 제조된 용기는 사용 후 폐기한다.
5. 내용적 125L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 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한다. 다만, 아세틸렌용기에 부착된 안전장치(용기가 가열되는 경우 용융 합금이 녹아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를 말한다)는 용기 재검사 시 적합할 경우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6. 복합재료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
7.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폐기한다.

2. 특정설비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설비는 재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평저형 및 이중각 진공단열형 저온저장탱크

나. 역화방지장치

다.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라. 자동차용가스 자동주입기

마. 냉동용특정설비

바. 대기식 기화장치

사.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부착되지 않은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아.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중 다음에서 정한 것

1) 초저온 저장탱크

2) 초저온 압력용기

3) 분리할 수 없는 이중관식 열교환기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

- 다고 인정하는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
- 자.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 차.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 카.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

특정설비의 종류	재 검사 주 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저장 탱크	<p>해당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p> <p>1) 5년(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것은 3년, 다만, 음향방출시험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마다. 다만, 검사주기가 속하는 해에 음향방출시험 등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p> <p>2)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 저장탱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이동하여 설치한 때마다</p>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안전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기화장치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것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	3년마다	
	설치되지 아니한 것	설치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
압력용기	4년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주기로 할 수 있다.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업소가 자체정기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정기보수 시까지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 내에서 사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